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6782
----------	-------

제안연월일 : 2026. 2. .

제안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4979	이인선 의원	2024. 10. 28.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3.) 상정 · 제안설명·검토보고·대 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 · 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0025	이성윤 의원	2025. 4. 22.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1.) 상정 · 제안설명·검토보고·대 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2. 4.) 상정 · 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2. 5.)는 법안심

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종사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

또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가목5) 삭제 및 나목8) 신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제외함(안 제2조제5호 나목1) 삭제).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함(안 제29조제6항).

라.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8조제4항).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5) 및 같은 호 나목1)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에 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제28조제4항 중 “그 상대방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상대방의”로 한다.

제29조제6항 중 “업주와 종사자”를 “업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u>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u> <u>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것</u> 6) ~ 11) (생략)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u> <u>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u> <u>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u> <u>임시설제공업</u> 2) ~ 7) (생략) <u><신설></u> 6. ~ 8. (생략)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생략)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u>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u> <u>부를 확인하여야 한다.</u> ⑤ ~ ⑩ (생략)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 입 제한 등) ① ~ ⑤ (생략) ⑥ 청소년유해업소의 <u>업주와</u>	6) ~ 11) (현행과 같음) 나. ----- <u><삭제></u> 2) ~ 7) (현행과 같음) 8) 「<u>음악산업진흥에 관한</u> <u>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u> <u>업</u> 6. ~ 8. (현행과 같음)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u> <u>따라 그 상대방의</u>-----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 입 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업주</u>-----
---	---

<u>종사자</u>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 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	---